

의안번호	2207799
의 퇴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4.
추 계 번 호	25G05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중소기업 설비투자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8조의5 (중소기업 설비투자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)	○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, 해당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의 각 과세연도별 손금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 - 단, 손금인정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- 적용기한: 2025.12.31.
2	안 제100조의33 (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주주환원금액(주주배당 및 자사주 소각)을 증가시킨 법인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 -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105% 이상인 법인에 대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※ 단,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적용 - 적용기한: 2027.12.31.
3	안 제100조의34 (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주주환원 확대기업이 개인주주에게 지급한 현금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 -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에 대해 분리 과세를 허용하고, 원천징수 세율을 14%에서 9%로 인하 ※ 주주환원 확대기업은 안 제100조의33 세액공제 대상을 의미 - 적용기한 2028.12.31.
4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2023년 과세기간 기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하여 30% 소득공제를 적용 ○ 2025년 상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상반기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 적용 - 2025년(1.1.~6.30.)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4년(1.1.~6.30.)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(연간 100만원 한도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공제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8조의5 (중소기업 설비투자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0조의33 (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00조의34 (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설비투자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,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,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는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8조의5, 제100조의33, 제100조의34 및 제126조의2)
 - 안 제28조의5는 중소기업이 2025년간 설비투자 자산을 취득한 경우 회계상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함에 따라,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－ 2025년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가속상각 또는 일시상각을 허용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세대상소득 및 세수감소가 예상됨
 - 안 제100조의33은 주주환원금액이 최근 3년 평균의 105%를 초과한 유가증권

및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초과분의 5%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단,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법인세의 10% 수준으로 제한하고, 이월공제를 허용
- 적용기한: 2027.12.31.

- 안 제100조의34는 주주환원 확대법인으로부터 획득한 배당소득에 대해 현금 배당의 일부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, 원천징수의 적용세율을 5%p 인하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대상 소득금액: 차년도 현금배당 $\times$ (직전 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증가분 + 10%)
- 특례내용: 종합과세 대상은 25% 분리과세 허용, 원천징수 세율 인하(14% $\rightarrow$ 9%)
- 적용기한: 2028.12.31.

- 안 제126조의2는 2025년 상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4년 상반기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, 일정 매출액 이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30%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2025년 상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(연간 100만원 한도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공제

- 안 제28조의5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의 신설에 따라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 및 금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구체적인 규정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추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산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- 참고로, 2023년 기준 제조업 중소기업의 자산유형별 설비투자액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제조업 중소기업의 자산유형별 설비투자액: 2023년

(단위: 조원)

	총액	토지	건물,구축물	기계장치	차량운반구	기타
설비투자액	39.3	15.6	8.7	9.9	2.5	2.6

자료: 중소기업벤처부, 「중소기업실태조사」, 2025.2.

□ 안 제100조의33 및 제100조의34의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식시장 상장법인의 배당금 등 주주 환원금액의 규모와 이에 따른 개별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 추이 등을 추정 하여야 하나,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○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법인별·투자자별 배당소득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, 이는 법인이익 등 시장요인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한 이익유보 등 기업경영상의 결정과도 관련이 있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할 경우 대체로 실적결산 이후 차년도의 배당여력이 증가하지만, 향후 시장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익을 유보할 경우 배당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
- 이외에도 법인 영업실적의 증감과 관계없이 배당성향을 유지하거나 실적 호조에도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 등으로 배당성향을 감소시키는 등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배당금의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
- 참고로, 2020년 이후 유가증권 시장의 현금배당 규모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현금배당 추이: 유가증권 시장(KOSPI) 기준

(단위: 조원)

연도	2020	2021	2022	2023
현금배당	33.2	28.6	26.6	27.5

자료: 한국거래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가적으로, 개정안의 소득세 과세특례의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 확대기업 배당금액의 개인투자자별 분배내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주요 투자자의 지분 등을 제외한 개인별 분포에 대한 정보는 부재
 - 상장법인의 공시자료는 임원과 주요 주주(지분 5% 이상 보유한 자 및 특수관계자)의 지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나, 그 외 개인투자자들의 지분분포 등의 정보는 부재

□ 안 제126조의2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신용 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한 소득세 신고자와 사용금액 증가분,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- 소비증가분에 추가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소득세 신고자의 수,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, 결정세액 등의 자료 필요
- 일정 매출액 이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의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상세자료, 이중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필요
- 그러나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증가한 자의 소득세 신고내역 및 간이과세자 등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 곤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